

KDI정책포럼 제277호(2020-02) (2020. 5. 14)

내용문의 한요셉 044-550-4094 **자료문의** 홍보팀 044-550-4030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요셉 KDI 연구위원(han@kdi.re.kr)



* 본 포럼은 한요셉,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책연구시리즈 2019-03, 한국개발연구원, 2019)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임.

요 약

-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됨.
 - 제도 변화 전후의 고용 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
 -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함.

1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우려

■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이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취업 자 감소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노동력 활용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짐(권규호·조동철, 2014).
 -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넘어 고령층 근로자의 인적자본 활용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정년 연장의 필요성 증대
- 정년 연장은 고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의 하락을 막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안의 하나이기도 함.
- 65세로 점진적 상향 조정 중인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 60세인 정년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9년 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

■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정년 연장이 실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는 공공부문이나 일부 대기업 등으로 상당히 제한 적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정년 연장이 실제 은퇴연령을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
-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경우 청년 일자리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 우리나라에서의 정년 연장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필요

-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이 주로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증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와 차이가 있음.
- 또한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 간의 대체관계와 관련된 기존 해외문헌은 주로 조기퇴직이 청년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논의하였는데(예: Gruber and Wise, 2010), 이와 같은 논의만으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지를 파단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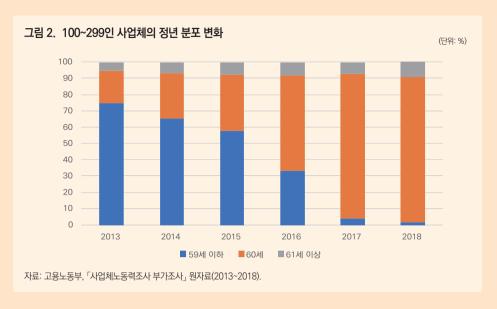
2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단계적 시행

■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

- 동법에서는, 각 사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제19조 제1항),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제19조 제2항)
- 이러한 개정사항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음.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각 사업체 단위의 정년은 상당한 폭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정년 연장 이전의 사업체 단위 정년은 주로 55세와 58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사업체는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정년을 변화시킴(그림 1, 2).

3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영향 분석

■ 본고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각 사업체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년 연장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고용보험 DB의 정보¹⁾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도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내에서 일어난 제도적 변화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년 연장의 효과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제도 시행 시 혜택이 특정 연도 이후 출생집단에 집중되었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년 연장에 따른 각 연령별 고용 변화를 사업체 단위에서 살펴봄.
 - 예를 들어 제도 변화 이전에 58세 정년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57년생 근로 자는 2015년에 58세로 정년은퇴를 하지만, 1958년생 근로자는 제도 변화의 대상자로 2018년에 60세로 정년은퇴를 하게 됨.
 - 55~60세 근로자 수는 비슷하지만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예: 1958년생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체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각 연령별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정함.

^{1 2016}년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70.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84.2%가 가입되어 있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민간사업체

- 분석 결과,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 (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의 추정 결과는 제도적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줌.
 - 고령층 고용 증가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한편, 정년 연장의 수혜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 치가 1보다 작을 수 있음.
 - 예컨대 명예퇴직으로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할 수 있으며, 건강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존재

표 1.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간사업체, 규모별

종속변수: 고령층 고용 변화(시행 전후)	(1) 10~999인 사업체	(2) 10~99인 사업체	(3) 100~499인 사업체	(4) 500~999인 사업체	(5) 1,000인 이상 사업체
정년 연장으로 예상된 고령 노동 증가	0.587** (0.056)	0.382** (0.040)	0.501** (0.099)	0.630** (0.087)	1.004** (0.263)
정년 연장 없을 경우의 고령 노동 변화	0.156** (0.011)	0.215** (0.005)	0.135** (0.013)	0.124** (0.030)	0.190 (0.157)
 연도 X 월 고정효과	Υ	Υ	Y	Υ	Υ
사업체 고정효과	Υ	Υ	Y	Υ	Υ
N(Obs)	3,137,399	2,865,538	248,482	23,379	15,100
adj. R²	0.347	0.298	0.322	0.413	0.600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사업체 단위에서 군집됨. +p(0.1, *p(0.05, **p(0.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2013. 3~2019. 3).

■ 한편,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의 추정 결과는 제도적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줌.
 -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추정치는 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작아짐.
-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기존 정년별로 추가분석한 결과(표 3)에 서도,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0.4명)
 - 반면,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이었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표 2.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간사업체, 규모별

종속변수: 청년층 고용 변화(시행 전후)	(1) 10~999인 사업체	(2) 10~99인 사업체	(3) 100~499인 사업체	(4) 500~999인 사업체	(5) 1,000인 이상 사업체
정년 연장으로 예상된 고령 노동 증가	-0.221** (0.055)	0.027 (0.036)	-0.188** (0.057)	-0.258* (0.125)	-0.996 ⁺ (0.549)
정년 연장 없을 경우의 고령 노동 변화	0.013 (0.008)	-0.001 (0.003)	0.027* (0.011)	0.000 (0.036)	-0.055 (0.064)
 연도 X 월 고정효과	Υ	Y	Υ	Y	Υ
사업체 고정효과	Υ	Y	Y	Y	Υ
N(Obs)	3,137,399	2,865,538	248,482	23,379	15,100
adj. R²	0.254	0.256	0.253	0.256	0.22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사업체 단위에서 군집됨. +p<0.1, *p<0.05, **p<0.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원자료(2013. 3~2019. 3).

표 3.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간사업체, 기존 정년별

종속변수: 청년층 고용 변화(시행 전후)	(1) 전체	(2) 55세 이하 사업체	(3) 56~57세 사업체	(4) 58세 사업체	(5) 59~60세 사업체
정년 연장으로 예상된 고령 노동 증가	-0.221** (0.055)	-0.391** (0.086)	-0.231** (0.072)	-0.007 (0.115)	-0.034 (0.238)
정년 연장 없을 경우의 고령 노동 변화	0.013 (0.008)	-0.147 (0.127)	-0.003 (0.039)	0.013 (0.057)	0.039** (0.014)
연도 X 월 고정효과	Υ	Υ	Υ	Υ	Y
사업체 고정효과	Υ	Υ	Υ	Y	Y
N	3,137,399	75,825	60,209	75,575	139,363
adj. R²	0.254	0.326	0.152	0.288	0.28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사업체 단위에서 군집됨. +p(0.1, *p(0.05, **p(0.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2013. 3~2019. 3).

5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체와 운영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별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도 변화 이전부터 이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음.
 -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미이행기관의 명단은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고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됨.
- 동시에, 일정 연령 이상 고용 보장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되었음.
 -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정년 보장형)

- 기존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의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정년 연장형)
- 절감된 재원으로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또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 연장자 증가분 이상을 신규채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별도정원을 인정

■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청년 고용도 증가함.

- 공공기관에서도 제도 변화 이전에 정년 연장의 대상자가 많은 사업체에서 제도 변화 이후 고령층 고용 증가가 크게 나타남(표 4의 8열).
 - 다만, 그 폭은 민간사업체에 비해서는 작은 편임.2)
- 한편, 제도 변화 이전에 정년 연장의 대상자가 많은 사업체에서 제도 변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함(표 4의 2열).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이 강제되었던 점이 가장 직접 적인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정년 연장 대상자 1명 증가 시 청년층 고용은 오히려 1명 이상 증가
- 다만, 이러한 정책 시행 시 고령과 청년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 이 있을 수 있음.
 - 같은 분석을 연령대별로 실시한 결과, 40대 초반에서는 고용 감소가 관찰되는데 (표 4의 5열),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결원 발생 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4. 공공기관의 각 연령별 고용 변화 분석

종속변수: 연령별 고용 변화 (시행 전후)	(1) △All	(2) △15~29	(3) △30~34	(4) △35~39	(5) △40~44	(6) △45~49	(7) △50~54	(8) △55~60
전년 연장으로 예상된 고령 노동 증가	1.556 (1.200)	1.218* (0.513)	0.127 (0.357)	-0.055 (0.310)	-0.577* (0.227)	0.099 (0.439)	0.431* (0.168)	0.403** (0.146)
전년 연장 없을 경우 고령 노동 변화	0.099 (0.395)	0.097 (0.163)	-0.081 (0.087)	-0.125* (0.064)	-0.146* (0.058)	0.058 (0.071)	-0.003 (0.058)	0.206** (0.036)
연도 X 월 고정효과	Υ	Υ	Υ	Υ	Υ	Υ	Υ	Υ
사업체 고정효과	Υ	Υ	Υ	Υ	Υ	Υ	Υ	Υ
N(Obs)	7,493							
adj. R²	0.412	0.322	0.476	0.466	0.480	0.421	0.396	0.37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사업체 단위에서 군집됨. *p<0.1, *p<0.05, **p<0.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원자료(2013. 3~2019. 3).

2 민간사업체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연장된 정년에서 의 임금이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 지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년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³⁾ 특히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제도적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만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고령 인력의 직무설계를 포함한 노무인사관리의 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과 현재 출생연도 4년당 1세씩 증가하고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되어야 함.

-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층 고용 증가효과는 규모가 큰 민간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나며, 그 밖의 사업체에서는 작게 나타남.
 -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이 보다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제도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임.
- 고령층의 특수한 필요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함.
 - 고령층의 경우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2019).
 - 이러한 필요에 특화된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원활 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

참고문헌

- 권규호·조동철,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조동철 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03, 한국개발연구원, 2014.
- 한요셉,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9-03, 한국개발연구원, 2019.
- Gruber, Jonathan and David A. Wise (eds.),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2013. 3~2019. 3).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13~2018).
- 통계청,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9. 7.

한요셉(2019)의 제4장에서는 경제활동인 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고령자 고용률 분석 결과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